현송세무회계 · 양가에서 결혼자금 받을 때

양가 결혼자금 증여 체크리스트

같은 돈이라도 **누가, 누구에게서** 받느냐에 따라
공제가 1억 5천이 되기도, 1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.

받는 사람 기준, 관계별 공제

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 ·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

내 부모님 · 조부모님
직계존속 ·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
1억 5천
5천만 + 혼인 1억

내 부모님 · 조부모님
결혼과 상관없는 평소 증여 (성년)
5천만

시부모님 · 장인·장모님
배우자의 부모 = 인척 → 혼인 공제 없음
1천만

남편 ↔ 아내
배우자 간 증여
6억

그래서,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

신랑·신부 모두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 · 10년 내 받은 돈 없을 때

신랑 ← 신랑 부모님
1억 5천

+

신부 ← 신부 부모님
1억 5천

=

부부 최대
3억

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, 장인·장모님이 사위에게 직접 주시면 **1천만 원**만 공제됩니다.
양가 지원은 **자기 부모님 → 자기 자녀** 방향으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.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·제53조의2 (2026. 1. 2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계산해 보면

같은 1억 5천,
받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

A · 아들이 자기 부모님께

신랑이 부모님께 1억 5천 (혼인신고 앞뒤 2년 안)

증여받은 금액	1억 5천만 원
공제 (기본 5천만 + 혼인 1억)	– 1억 5천만 원
과세표준	0원
내야 할 증여세	**0원**

B · 며느리가 시부모님께

신부가 시부모님께 1억 5천

증여받은 금액	1억 5천만 원
공제 (인척)	– 1천만 원
과세표준	1억 4천만 원
세율: 1천만 + 1억 초과분 4천만 × 20%	1,800만 원
기한 안 신고 시 세액공제 3%	– 54만 원
내야 할 증여세	**약 1,746만 원**

증여세 세율: 과세표준 1억 이하 10% · 5억 이하 20% · 10억 이하 30% · 30억 이하 40% · 30억 초과 50% (누진). **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받은 다른 돈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**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예시는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,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. 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·제53조·제53조의2·제56조·제69조.

받기 전에 꼭 알아둘 것

기준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

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**신고일 앞뒤 각 2년** 안에 받아야 합니다. 식은 올렸지만 신고 전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.

할머니·할아버지가 주셔도 한도는 함께

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·혼인 1억 한도를 **나눠 씁니다.** 공제를 넘겨 세금이 생기면, 손주가 받는 경우 세금에 원칙적으로 **30%가 더 붙습니다.**

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

아이를 낳으면 출생일부터 2년 안에도 1억 공제가 있지만, 결혼 때 받은 공제와 **합쳐 1억이 한도**입니다.

새어머니·새아버지는 법률혼이면 포함

부모님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. 단, **사실혼은 제외**됩니다.

미리 받았는데 2년 안에 결혼을 못 하면

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**3개월 안에 수정신고(또는 기한 후 신고)**하면 가산세를 면제·감면받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. 약혼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,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.

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

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**세액의 3%를 공제**받습니다. 가족 간이라도 **계좌이체로 주고받아**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세요.

현송세무회계
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, 제53조의2 제1항~제3항·제5항·제6항, 제57조, 제68조, 제69조 (2026. 1. 2. 시행).

증여 전 마지막 점검

우리 집 상황 체크해 보세요

하나라도 **"모르겠다"**면, 돈을 옮기기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쌉니다.

- [] **돈을 주시는 분이 받는 사람의 친부모·조부모인가요?**
 시부모님·장인장모님이 직접 주시면 1천만 원 공제
- [] **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나요?**
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
- [] **최근 10년 안에 부모님·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나요?**
 있다면 그만큼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줄어듦
- [] **배우자도 자기 부모님께 따로 받을 계획인가요?**
 각자 받으면 부부 합쳐 최대 3억
- [] **출산 공제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가요?**
 결혼·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
- [] **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나요?**
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→ 세액 3% 공제
- [] **현금 대신 집·지분을 받거나, 대출을 같이 넘겨받나요?**
 평가 방법과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담 필요

애매한 항목이 있다면

양가 금액·날짜를 알려주시면,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 게 좋은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프로필 링크 → 홈페이지 상담 신청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허훈 · 강남역

02-562-0111
hyunsongtax.com 상담 신청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(2026. 1. 2. 시행) 기준 일반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